##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6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전종덕·박홍배·서미화

김남희 · 김선민 · 정혜경

송재봉 · 염태영 · 김재원

윤종오 · 송옥주 · 한창민

용혜인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 덥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②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ol> <li>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li> </ol>	<u>&lt;</u> 삭 제>
일용근로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	4.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
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u>업주</u>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	
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u>&lt;신 설&gt;</u>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